

School Libraries in 1974.

學校圖書館의 回顧와 展望

徐 章 錫
圖協 學校圖書館部會長

1. 概 觀

많은 일을 熱心히 最善을 다하여 能力 껏 處理했을 때는 尙한 勞苦와 분주함으로 지칠대로 지쳤더라도 歡喜의 기쁨은 우리의 앞날에 새 希望과 새 推進力을 가져다 준다. 우리나라 學校圖書館分野는 이 땅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굉장한 봄과 더불어 그동안의 教育方法에 劃期的인 새로운 局面을 소개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 實은 그렇지 못하고 學校란 地域社會에서 資料保管所란 느낌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겨우 學生들의 自習이나 復習을 하기 爲한 場所구실을 면치 못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每年 많은 問題點을 안고 몸부림치다 圖書館法이 公布된 60年代 後半에도 별 理由없이 希望에 부풀어 東奔西走하다 精神을 가다듬어 自己 처신을 살펴왔을 때에는 역시 出發點에 머무른 狀態에서 70年代에 들어 섰다. 이런 狀態를 痛感한 몇분들의 努力으로 1972年度 大邱 계명대학에서 열린 全國 圖書館大會에서 도서관협회 정관에 依據 學校圖書館部會가 發足되면서 本人에게 會長이란 重責이 맡겨졌다는 것을 뒤늦게야 듣고 理事會를 수차 소집하여 여러 問題點을 의논한 결과 많은 問題點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 中 한 두가지만을 간추려서 活動하였다. 그러나 行政府 깊숙히 學校圖書館에 關한 인식이 不足하다기 보다 전혀 없다시피 해 있었으며 게다가 設상가상으로 社會的인 諸般여건이 同時에 복잡해지면서 問題解決의 與件도 形成하지 못한채 우리의 方向은 不透明해진 속에서 오늘에 이른 것을 會長인 本人은 全國學校圖書館人諸位께 뒤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活動하면서 몇가지 느낀 것은 學校教育課程에서 學校圖書館의 位置를 명확히 해야 하겠다. 勿論 지금까지도 司書教師 諸位께서 많은 手苦를 하고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을 紙面을 통해 소개할 기회를 얻어 여론화할 必要性을 느꼈다. 그래서 韓國圖書館協會

의 협조를 얻어 今年度 도협월보 八月號에 各市道別 學校圖書館의 사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으나 가장 問題點이 많으리라 생각했던 제주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몇개 市道가 빠져 유감스러웠다. 아마 빠진 그 자체가 바로 큰 問題點이 된다고 본다. 1975年度에는 各市道別 現況, 活動, 特殊性, 개선點 등 많은 研究論文이나 報告書가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겠다고 생각된다. 만약에 道협월보에 紙面이 허락되지 않으면 學校圖書館部會에서 따로 기관지나 論文集을 낼수 있도록 豫算이 마련됐으면 한다. 특히 學校圖書館의 본연의 업무인 독서지도에 關한 研究論文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2. 1974年度 學校圖書館의 이모 저모

이나라에 學校圖書館이 심어진 이래 처음으로 今年에는 文教部에서 “학교도서관 육성계획”과 “학교교서관 운영지침”이 장학방침으로 시달렸다. 그래서인지 統計上에 나타난 것을 보면 發展한 흔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道협월보 8月號에 報告된 各市道別 運營實態를 보면 그렇지도 안나보다. 그러면 統計를 中心으로 學校圖書館 設置現況, 豫算問題, 司書教師 問題, 學校圖書館 資料問題, 學校圖書館 設置目的에 따른 學校圖書館 運營과 圖書館 教育問題 등의 순으로 이야기해 보자 한다. 여기에 記載된 統計는 學校數와 學生數는 文教部발행인 “문교통계 연보(1974. 4. 1. 현재)”를 참고했으며 그외에 圖書館數, 장서수, 豫算은 도서관협회의 統計를 참고했다. (1974. 4. 현재) 또한 司書教師에 對한 統計는 문교부 발행인 “문교통계 연보(1974)”에 의한 것이다.

1) 平準化過程에서의 學校圖書館 設置狀況

學校圖書館 設置에 對한 母法은 圖書館法(法律第 1424號 : 1963. 10. 28 公布) 第3章 第25條와 同施行令(大總領令 第2964號 : 1967. 3. 27. 改正) 第2條(圖書館 施設基準)를 根幹으로 學校施設 設備基準令(大總領令

第 6854號 : 1973. 9. 14. 改正)에 依한다.

學校施設 設備基準令 第5條 第1項에 校舍의 施設로서 圖書館(室)을 두게 돼 있으며 同 第6項에서는 “圖書館(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로 規定하였으며 이를 “學校施設 設置基準令 第16條 및 부칙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學校 年度別 施設보충에 關한 것” 第3條(미달시설, 시설보완) 第1項에서 “수 부칙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高等學校의 미달된 시설 설비의 연도별 보완은 별표 2에 依하여야 한다”로 規定하였다.

이에 依하면 1974年度까지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는 100% 完置해야 하며 도청소재지는 90%, 기타 지역은 80%까지 보완해야 하도록 돼 있다. 또 이 내용을 1974年度初에 文敎部와 市道 장학방침구현계획으로 시달된 “학교도서관 육성계획”에서도 다시 강력히 지시 하였다.

《별표 3》 도서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

구 분	열람좌석수	도 서 수
국민학교	보통 교실 겸용	1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
중 학교	1학급당 3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이어야 한다
고등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1학급당 5석 다만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5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고등학교의 연도별 시설보충계획

지 역 별	1973	1974	1975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80%	100%	
도청소재지	80%	90%	100%
기 타 지 역	70%	80%	100%

그러나 별표 1974년도 학교도서관 설치현황 통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학교는 全國 32.2%의 설치비율을 보이고 있고 이미 平準化作業이 全國적으로 完수했다는 中學校의 경우도 全國적인 統計가 42.1%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首都인 서울만 보더라도 겨우 49.7%의 설치비율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아마 말성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면 學校圖書館의 必要性이 없다는 것일까?

高等學校인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가 95%로 서 보충기준 100% 부표에서 5% 미달이며 기타지역은 충북의 84.7%와 경북의 88.8%를 제외하고는 거의 60%정도로서 고등학교 연도별 시설보충기준인 80%보다는 20%나 미달된 셈이다. 이런 狀態에서는 平準化過程에서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勿論이러니와 學生들의 독서지도라든가 습관을 기르는데 있어서 장학지침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여기서 한가지 더 부연할 것은 統計上의 設置비율만 보고 만족할 수도 없다. 그 運營內容이 정말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學校圖書館이 몇개나 되느냐도 큰 問題로서 실은 이런 내용을 중점으

1974년도 학교도서관 설치현황

<1974. 4. 1. 현재>

학교 별	구분 도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비고
		()	()	()	()	()	()	()	()	()	()	()		
국민학교	학교수	241	107	708	633	391	647	595	685	1,027	870	111	6,315	
	도서관수		(1)	(80)	(153)	(44)	(48)	(47)	(217)	(120)	(116)	(18)	(844)	
	설치비율	46.5%	86.9%	27.7%	13.3%	25.6%	39.1%	20.5%	39.7%	42.8%	24.8%	27.9%	32.2%	
중 학교	학교수	179	71	228	141	100	195	171	270	300	245	35	1,935	
	도서관수			(2)	(1)		(2)		(11)				(16)	
	설치비율	49.7%	91.5%	27.6%	26.2%	87%	46.1%	41.5%	21.4%	49.6%	37.1%	42.8%	42.1%	
고등학교	학교수	143	59	155	80	46	93	87	115	162	127	22	1,089	
	도서관수	(102)	(29)	(67)	(41)	(27)	(61)	(52)	(70)	(88)	(66)	(10)	(613)	
	설치비율	95.8%	94.9%	65.8%	47.5%	84.7%	78.4%	64.3%	64.3%	88.8%	62.2%	45.4%	74.1%	
합 계	학교수	563	237	1,091	854	537	935	853	1,370	1,489	1,242	168	9,339	
	도서관수	(102)	(30)	(149)	(195)	(71)	(109)	(101)	(287)	(219)	(182)	(28)	(1,473)	
	설치비율	33%	21%	36%	15%	22%	41%	24%	52%	73%	36%	5%	3,661	
	설치비율	60.0%	90.2%	33.0%	18.6%	42.0%	44.4%	29.1%	38.1%	49.2%	31.0%	33.3%	39.2%	

※ 1. 학교수는 문교부 발행 문교통계연보에 의했으며 도서관 설치수는 도서관협회통계에 依했다.
2. () 안은 분교수이다.

1974년도 도서구입비(예산)

학교별	도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구분	서울	부산				
국민학교	학생수	870,394	307,417	590,942	345,778	289,596	534,289
	예산인당비	19,354,782	13,278,216	5,384,059	5,635,010	7,030,580	11,656,240
	도서구입비	22원	43원	9원	16원	24원	21원
중학교	학생수	366,463	124,628	204,526	92,995	89,650	177,494
	예산인당비	30,333,379	41,104,380	24,032,900	6,771,900	29,360,920	17,222,325
	도서구입비	82원	329원	117원	72원	327원	97원
고등학교	학생수	254,066	93,140	95,071	4,634	34,060	72,906
	예산인당비	64,073,260	42,872,680	43,778,800	7,424,105	19,986,000	22,552,690
	도서구입비	252원	267원	460원	174원	586원	309원
합계	학생수	1,591,023	525,185	890,539	481,607	413,306	784,689
	예산인당비	113,761,421	97,255,276	72,195,659	19,831,015	56,377,500	51,431,255
	도서구입비	71원	185원	81원	41원	136원	65원

학교별	도별			경 북	경 남	계 주	합 계
	구분	전 북	전 남				
국민학교	학생수	466,607	787,957	801,860	553,449	70,379	5,618,768
	예산인당비	12,663,068	29,427,640	31,126,795	9,970,760	1,250,900	146,778,050
	도서구입비	27원	37원	38원	18원	17원	26원
중학교	학생수	137,458	219,007	284,433	208,089	25,232	1,929,975
	예산인당비	13,816,840	18,285,740	55,038,690	16,689,020	2,015,500	253,666,494
	도서구입비	100원	83원	193원	80원	73원	131원
고등학교	학생수	65,278	95,587	134,275	80,779	13,413	981,209
	예산인당비	12,266,500	40,894,344	84,762,690	14,891,080	1,156,400	354,653,549
	도서구입비	188원	427원	631원	184원	862원	361원
합계	학생수	669,343	1,102,551	1,220,568	842,317	109,024	8,529,952
	예산인당비	38,749,408	88,607,724	170,928,175	41,550,860	4,417,800	756,102,993
	도서구입비	57원	80원	140원	49원	40원	88원

※ 1. 학생수는 문교부 발행 문교 통계연보에 의했으며 예산액은 도협 통계에 의했다.

로 하는 장학지침이 시급하다고 본다.

2) 豫算問題

豫算에 關한 母法은 圖書館法에 그 規定이 없으니 同施行令에도 없을 것은 當然하다. 그러나 10餘年동안 그럭저럭 學校運營費로 圖書館을 運營해 왔다.

그러나 最近에 와는 國家豫算 緊縮政策과 平準化 過程으로 學校運營費自體가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지라 學校圖書館 豫算에 타격을 받을 것은 當然하다.

그러나 前述한바와 같이 今年初에 文敎部와 市, 道의 장학방침 구현계획으로 시달된 “학교도서관 운영지침”이 시달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同 第6章 第1項 “경비 節減방법”에서 “학생 자율적경비”등에서 최대한의 도서관경비를 節減한다”로 되어있으며 第2項에서는 “경비산출”을 국민학교는 학교실정에 따라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했고 中學校에서는 최저 1인당 350원을 확보 하도록 했다. 그러나 中學校가 全國평균 131원에 불과하며 最高가 釜山의 329원이며 最低는 慶南의 87

원과 서울의 82원이다. 高等學校는 全國평균이 361원이며 最高는 제주도의 862원이며 最低는 강원도의 170원과 慶南의 184원이고 서울과 부산은 252원과 267원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點을 보더라도 學校실정이 어려워 지시대로 圖書費를 節減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또한 同 第6條 第3項 경비배분에서 도서구입비 80% 신문잡지비 8%, 도서수리비 8%, 잡비 4%로 돼 있다.

그러나 一線學校 현경이 人件費를 中心으로 圖書館運營費가 오히려 圖書구입비보다 많이 든다는 것도 알아야 겠다. 또 한가지 참고 할것은 大都市로 갈수록 도서비가 적게 책정됨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것은 시설비가 포함되지 않는 理由에서 라고도 볼수 있다.

3) 司書敎師 問題

圖書館法 第6條 第1項과 同施行令 第6條 第1項에서 司書敎師 또는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敎師를 최소한 한 사람은 두도록 돼 있으며 이에 對한 것을 今年度 文

중·고등학교 사서교사현황

문교부 발행 문교통계연보

학과별	구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비고
	T/O	현원													
중학교	T/O														
	현원		15	10	1	1	1	2		3	4	5		42	
고등학교	T/O													33	1968년도 T/O임
	인문계	국립	7	1						1	12	1	1		23
사립		28	1	1			1	1	1	3	3	1		39	
실업계	국립	1													
	사립	20	1				1			3	1			5	
합계	국립	21	1				1			4	3	1		26	
	사립	56	3	1			2	2	2	19	7	3		93	
합계			71	13	2	1	1	4	2	22	11	8		135	

敎部, 市, 道 장학구현방침으로 “학교도서관육성계획”에서도 강조했다. 그러나 問題點은 法自體에도 있다. “司書의 職務를 담당할 敎師”란 條項때문에 꼭 司書敎師를 두지 않고 사무분장으로 一般敎師에게 圖書館을 맡겨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一般 敎師中에서 圖書館學 강습 몇시간 이상 받은 사람으로 되어도 좀 다를 것이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1968年度에 全國 高等學校 敎師 T/O에 司書敎師를 33名이나 썼지만 그후에도 더 이상 T/O가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現在 33名의 T/O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통계참조). 이상과 같은 現狀은 一線學校圖書館이 司書敎師의 必要性을 긴박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事實도 된다.

이런 현상은 中學校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경우 平準化作業으로 약간의 조건과 더불어 校長이 원하면 T/O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그 實은 全中學校에 司書敎師가 배치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T/O를 받은 學校에서도 圖書館과는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실경이다. 이런 狀態를 司書敎師의 進路問題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만 책임을 돌리기에선 석연치 않다. 다시말하면 學校圖書館運營方向과 司書敎師의 活動能力에도 問題點이 있다고 본다.

學校圖書館의 運營方向이 學校 敎育課程과 밀접한 關係에 있게되면 다소라도 해결되리라 보며 이런것에 關係한 研究를 司書敎師 諸位께서 많이 해야 되겠다.

今年度 도협월보 8月號의 學校圖書館運營 特輯에서도 現學校圖書館이 學校敎育課程과 별개의 지역으로서

제구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몇개道에서 암시하고 있다.

4) 學校圖書館 資料問題

資料에 關한 母法은 圖書館法 第3條 第3項에서 “學校圖書館이라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學生 및 敎員의 學習, 敎養, 調查研究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한다”로서 學校圖書館의 目的도 되겠으나 또 그 目的을 수행하기 爲한 資料蒐集에 對한 目的도 되겠다.

또 學校施設 設備基準令 第5條 第6項에 별표와 같이 圖書館(室)의 열람좌석수와 비치도서수를 規定하였다. 국민학교의 경우 1학급당 단행본 100권이상으로 책수는 1인당 1권 이상이란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統計上에 나타난 것으로는 全國학생이 1인당 2册 半이 넘는다. 그 책의 질과 내용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다행한 일이다.

중학교의 경우 한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이니 학생 1인당 2책 이상이란 것이다. 그러나 今年度 統計에서는 全國學生이 1인당 한책반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경우 1학급당 단행본 150권이상이니 학생 1인당 2책반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統計에 3책이 넘는다. 여기서 부연 할것은 그 册의 內容이 學生들에게 얼마나 利用되고 있으며 利用될 수 있도록 운영하느냐가 더욱 問題이다. 다음에 今年度 文敎部 市, 道 “학교도서관운영지침” 제4장 3항 “다”의 「장서확충계획」에 의하면 최종년도의 목표량을 확보한 학교에서는 매년 학생 1인당 0.5책이상의 신간도서를 수입

1974년도장서현황

구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국민학교	학생수	370,494	307,417	590,943	345,778	289,596	534,289	466,607	787,957	801,860	553,449	70,379	5,618,768
	장서수	331,616	304,890	393,599	146,137	140,137	446,991	197,223	759,397	12,191,461	410,388	54,057	16,017,071
	1인당책수	0.38	2.6	0.7	0.4	0.5	0.8	0.4	0.96	15	0.74	0.76	2.8
중학교	학생수	366,463	124,628	204,536	92,995	89,650	177,494	137,458	219,007	284,433	208,089	25,232	1,929,975
	장서수	364,778	532,159	196,548	69,999	296,177	205,567	163,778	117,559	498,363	234,772	28,782	2,708,502
	1인당책수	0.995	4.26	0.96	0.75	3.3	1.15	1.19	0.53	1.75	1.12	1.14	1.40
고등학교	학생수	254,066	93,140	95,071	42,634	34,060	72,906	65,278	95,587	134,275	80,779	13,413	981,209
	장서수	787,348	328,142	379,949	53,313	134,818	233,793	165,169	267,596	710,362	241,369	19,067	3,320,926
	1인당책수	3.0	3.5	3.9	1.25	3.9	3.2	2.5	2.79	5.29	2.98	1.42	3.38
합계	학생수	1,591,022	525,185	890,539	481,607	413,306	784,689	669,343	1,102,551	1,220,568	842,317	109,024	8,529,952
	장서수	1,483,752	1,665,191	970,096	269,968	571,132	886,351	526,160	1,144,552	13,300,186	886,529	101,906	22,046,499
	1인당책수	0.93	3.2	1.09	0.56	1.38	1.13	0.79	1.04	10.9	1.05	0.93	2.58

※ 학생수는 문교부 발행 문교통계연보(1974)에 의했으며 장서수는 도립통계에 의한 것임.

하도록 돼 있다. 이때로 하자면 학생 2,000명인 학교에서는 연간증가 도서가 1,000여권이야 한다. 이에 따른 예산이 문제인데 1권의 책값을 평균 1,000으로 보면 도서구입비가 1,000,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실정이 순도서구입비로 이런 예산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도서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

구분	열람좌석수	도서수	비고
국민학교	보통 교실겸용	1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	
중학교	1학급당 3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이 상이어야 한다	
고등학교	1학급당 5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5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이 상이어야 한다	

5) 學校圖書館設置 目的에 따른 학교도서관 운영과 圖書館教育

圖書館法 第2條(定義)에서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 記敍, 視聽覺資料, 國家 및 地方行政資料, 鄉土資料 및 기타 必要한 資料(이한 圖書館資料라 한다)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利用에 供하게 하여 그 調査, 研究, 學習, 敎養, 레크리에이션, 其他 社會教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하는 施設을 말한다”로 이는 國立圖書館, 公立圖書館, 私立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 등 各관 種別 圖書館을 막라한 圖書館의 定義이면서 目的이다. 다음 同法 第3條 第3項에서 따로 學校圖書館의 目的을 “圖書館 資料를 蒐集, 整理, 保

存하여 學生 및 敎員의 學習, 敎養, 調查研究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利用에 供함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의 施設을 말한다”로서 資料를 蒐集하여 整理, 保存하는 目的이 바로 學生의 學習과 敎養을 爲함이며 敎員의 調查研究를 爲한 方法과 수단일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學校圖書館을 깊이 관찰해보면 資料蒐集保管 役割도 제대로 못하면서 自習室 役割에서 머물어 있다. 이것은 學校圖書館이 法에 依한 目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

또한 法대로 했다 하더라도 學校圖書館이란 敎育기관인 地域社會에 있으므로 敎育課程과 호흡을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도서관교육이 資料蒐集 整理가 主目的이 아니라 독서도가 최종 目的이 되어 모든 活動이 독서를 爲한 것이어야 되겠다. 특히 敎育課程의 特別활동에서 도서관이 있는 줄 안다. 이 특별 시간이 연중 72시간(2단위)이란 많은 時間이 있는데 이 時間을 圖書館운영면이나 이용면만 다룰 것이 아니라 독서지도면을 더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學校圖書館은 다른 館種別 圖書館과는 달리 學生들의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데 주목해야 그 目的을 다 하리라 본다.

3. 學校圖書館과 學校圖書館 部會의 當面問題

지금까지 말한바와 같이 統計上으로는 그런데로 運營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法規 自體에도 여러 가지 問題點이 많지만 法規대로 하고 있지도 못한 것이 學校圖書館이다. 그래서 行政의인 뒷받침도 시급하지만 自體의 運營이 새 方向을 찾아야겠다. 요즘 국민학교에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는데 學校圖書館이 그 현장 학습장이 되도록 운영된다면 현장학습을 야외학습이나

소풍학습의 탈을 벗겨 줄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975年度에는 學校圖書館部會에 研究分科委員會를 두고 研究하여 많은 論文이나 發表會를 갖으면서 여론화 시켜야겠다. 이렇기 爲해서는 豫算의 뒷바침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협회에서 협조해 줬으면 하지만 도서관협회는 협회대로 經濟面의 실마리가 풀리지 못하고 있으니 따로 會費를 거출해서라도 적극적인 活動만이 學校圖書館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4. 結 言

많은 統計를 제시하면서 많은 말을 했으나 내자신이 圖書館에 對한 專門家도 아니며 또 좀 안다 할지라도 全國 學校圖書館運營實態를 完全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回顧라기 보다 中언부언이 되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새해에 希望의인 方法이나 운영지침이 될 수 있는 內容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自體의 運營上의

問題點만 나열 한것 같다. 그러나 母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運營上의 目的을 비롯하여 設置規定, 豫算問題, 資料規定, 司書教師의 資格의 再검토, 進路問題, 배치規定 등 寸한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데나 同法의 哲學이 一般圖書館에 準하고 있기 때문에 教育課程과의 關係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전혀 無視당하고 있다. 그래서 독서지도面은 전혀 언급이 돼있지 않고 資料運營面과 圖書館利用面만 나타나고 있다. 이런點을 감안하여 圖書館이란 文化事業이면서 奉사가 따르기 마련이니(희생적인 奉사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法規를 초월하여 새로운 것을 다른 部門에서보다 빨리 찾아서 研究하고 실험하고 시범을 해서 發展에 發展을 거듭하는 1975年度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때에는 法規나 行政部가 그렇게 마냥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21面에서 계속)

이것이 다시 四端七情分理氣復(高大升)까지 誘導되어 退溪와의 主理說과 對立을 이루었던 것은 다 아는 事實이지만 朱子系統의 居敬窮理·理氣二元論을 이은 李彥迪의 理氣二元論과 李滉의 主理思想이 서로 엇갈린 속에서 問題되던 一部의 이 圖의 性格을 밝힌 것은 資料解說에서 意義있는 일이다.

□ 끝으로 蛇尾를 붙일것은 鄭駉讓教授와 筆者가 共同으로 엮은 「順菴 安鼎福 研究序說」—그의 生涯와 著述을 中心으로—(人文學 1輯)이다.

近間 影印된 「順庵叢書」 下學指南 속에는 黃泌秀 글씨의 이른바 順庵著述目錄에 依據, 順菴의 著述이 48種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그 著述 속에는 檢討되지 않은 책들이 더러 있다. 著述할려고 뜻을 두었다가 이루지 못한것도 있고 남의 것을 베껴진것도 들어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러 圖書館에서는 安鼎福의 글씨로 된 것은 모조리(베껴진 것이거나 아니 베껴진 것이거나 심지어는 그가 所藏하고 있었던 책까지도 모두) 安鼎福著書로 編目을 해 놓고 安鼎福著述로 貸出을 하고 있다. 그 數는 100을 훨씬 넘어 200에 內迫하고 있는 것이다. 이 稿에서는 「安鼎福研究」를 進行하는 중에서 그의 著述로 表示된 것을 일단 모두 檢討하는 打算에서 親筆本 「日省錄」과 「日記」 속에 있는 木川縣監當時가지고 갔던 「持來目錄」과 平素에 적어 두었던 「著述雜錄」을 發見, 實物과 對照해서 安鼎福의 著述與否를 가렸고, 또 그 밖의 著述은 實物은 없으나 年譜와 行狀 및 書札속에서 그의 著述의 種類를 밝힌 것이다. 그 結果 著書로는 23種, 雜文으로는 60餘種일뿐 (p.23, 32)임을 記述하고 있다. 그리고 從來에 安鼎福의 號가 「順庵」으로 알아 오던 것도 「집의 構造를 따

서 지은 「菴」字로서 「順菴」(p.10)이었고, 星潮의 弟子가 아니라. 私淑(p.8)한 處地였고, 四端에서의 善情論도 孟子의 影響을 받은 것(p.15)등을 밝히고 있다.

6

以上 紹介한 글들은 적어도 年餘以上の 時間을 所要한 것으로 獨創의이어서 글의 壽命은 적어도 오래 維持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紹介한 글중에는 흠을 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深奧하게 研究되었으며 主題가 작고 論理가 整然하고 漸新하여 好感을 갖게 한다. 더욱이 他人의 說을 引用하는데 汲汲하거나 紹介로 一貫하거나 讀者를 教育하거나 勸導하는 筆세는 전혀 풍기지 않고 史料도 原資料를 取扱해서 究明한 것들이다. 따라서 올해의 收穫(이밖에도 있겠지만 紙面上省略)이 이 몇 篇만으로도 足하다.

또 하나 반가운 것은 올해에 通過된 碩士學位論文 네篇이 두 誌에 轉載되었다. 여기에 그論文을 一一히 紹介치는 못하나 題目이 새롭고 內容도 忠實한 印象을 준다. 外國理論을 韓國의 實情에 適用시키며 問題를 提起한 것도 있지만, 圖書館에 接近될 수 있는 主題로서 全혀 未開拓分野를 着手하여 誠實히 研究하려는 姿勢도 보여 더욱 好感을 주고 있다.

끝으로 豫報해 둘 것은 千惠鳳教授의 癸未字에 관계되는 論文이 이달안으로 「書誌學」 7輯에 실려 나오기로 되었고, 鄭亨愚教授의 「中國印刷術의 發明과 그西傳」(by Thomeas Francis Carter, reviced by Luther Corrington Goodrich, 1955. 2nd ed.)의 譯書도 脫稿되었다고 하니 올해의 業績을 더욱 빛내 줄것으로 期待된다(1974. 12. 1)